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 1조 (계약목적)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 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으로 고령이나 노인성질환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주야간보호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 2조 (계약기간)

- ①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 ② 1항의 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 ③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 ④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 의사 표시가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된다.

제 3조 (급여범위)

주간보호급여는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지원 및 심긴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

제 4조 (급여이용 및 제공)

- ① 주야간보호급여 이용 및 제공은 장기요양급여 이용(제공)계획서에 의한다.
- ② '갑'의 주야간보호급여 이용시간은 아래와 같이 한다. 다만, 이 시간은 장기요양요원 등이 수급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서비스 제공 후 다시 수급자의 가정에 도착한 시간까지로 한다.

이용요일	이용시간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오전 시 분 ~오후 시 분

※ 사정에 의해 일시적으로 이용시간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 서비스 이용시작 1시간 전에 '을'에게 연락을 취해야 함.

제 5조 (월 이용료 및 그밖의 비용 부담액)

- ①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본인 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시설장이 정한다.

1. 비급여 대상 및 비용

식재료비	식비(1식) 3,000원×1, 간식비(1회) 500원 ※아침식사는 2,500원
이미용비	무료(자원봉사자 및 자격보유 직원 활용)

2. 월 이용료 한도액: 한도액 초과 시 본인부담금이 100% 추가

단위: 원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2023	1,885,000	1,690,000	1,417,200	1,306,200	1,121,100	624,600

3. 2023년 장기요양 수가

분 류		금액(원)
3시간 이상 ~ 6시간 미만	장기요양 1등급	38,630
	장기요양 2등급	35,760
	장기요양 3등급	33,010
	장기요양 4등급	31,510
	장기요양 5등급	30,000
	인지지원등급	30,000
6시간 이상 ~ 8시간 미만	장기요양 1등급	51,780
	장기요양 2등급	47,960
	장기요양 3등급	44,270
	장기요양 4등급	42,770
	장기요양 5등급	41,240
	인지지원등급	41,240
8시간 이상 ~ 10시간 미만	장기요양 1등급	64,400
	장기요양 2등급	59,660
	장기요양 3등급	55,080
	장기요양 4등급	53,580
	장기요양 5등급	52,050
	인지지원등급	52,050
10시간 이상 ~ 13시간 이하	장기요양 1등급	70,950
	장기요양 2등급	65,720
	장기요양 3등급	60,720
	장기요양 4등급	59,190
	장기요양 5등급	57,690
	인지지원등급	52,050
13시간 초과	장기요양 1등급	76,080
	장기요양 2등급	70,480
	장기요양 3등급	65,110
	장기요양 4등급	63,600
	장기요양 5등급	62,100
	인지지원등급	52,050

제 6조 (계약의 해제)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 전까지 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서비스 이용자가 시설 내에서 시설 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는 타 이용자(수급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2. 서비스 이용자가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이용자(수급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3.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4.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2회 이상 연체했을 경우

5.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6.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7. 3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다만, 이용자(수급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유보할 수 있음.
8. 이용자(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9.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10.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 7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 신원 인수인(보호자)의 권리

1. 이용자(수급자)가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 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2. 서비스 해당자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3. 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해 알 권리
4.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 주장, 급여계획을 결정할 권리
5. 대상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 변화 요청의 권리
6.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권리
7. 이용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8. 이용자 면회 및 외출에 관한 권리
9. 이용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10.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11.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포함하여 편의를 제공받을 권리

② 신원 인수인의 의무

1. 신원 인수인은 시설 및 그 비품에 대하여 이용자(수급자)로 인하여 발생한 오손, 파손 또는 멸실했을 때는 곧 자기비용으로 원상회복 시키던가 시설에서 정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2. 서비스 전 입소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하여 요양에 필요한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해야 한다.
3. 서비스 당사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변경 시 즉각 변경된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4. 신원인수인의 신변에 변화가 있을 경우 고지해야 한다.
5. 서비스 대상자의 상태변화 시 본 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화에 동의해야 한다.
6.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의무
7.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8.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포함한 인수인의 이용 준수의무